

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

(의안번호 제52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. 12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3. 2 | |
| 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1999. 3. 25 |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 |

2. 제안사유

- 1954년 개설된 배둔재래시장은 인근 개천, 구만, 회화, 마암면 주민들의 상업활동 중심기능 역할을 현재까지 하여 왔으나
- 산업의 발달로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 협소로 이용자 감소 등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음.
- 따라서 배둔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.

3. 용도지역 결정 (변경) 조서

구	분	면 적 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710,000	-	710,000	100.0	
주거지역	일반주거지역	301,100	△3,400	297,700	41.9	
	준주거지역	-	3,400	3,400	0.5	
일반상업지역		29,500		29,500	4.2	
녹지지역	소 계	379,400	-	379,400	53.4	
	생산녹지지역	69,000	-	69,000	9.7	
	자연녹지지역	310,400	-	31,400	43.7	

4.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 번호	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m ²)	변 경 사 유
		기 정	변 경		
1	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5-46 번지 일원	일반주거 지 역	준주거 지 역	3,400	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 지역의 완충기능과 도시 계획시설(시장)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2의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제안사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4년에 개설된 배둔 재래시장을 현대화 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인근 지역의 주거지역 3,400m²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져 함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 지역의 완충기능을 하므로써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음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는
- 답 : 일반주거지역에는 고성군건축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및 제52조의 건폐율 60%, 제54조의 용적을 400% 등이며, 준주거지역에는 고성군건축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물과 제52조의 건폐율이 70%이며, 용적율은 600%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의 차이가 있음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1999. 3. 25 출석위원 전원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불임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음.
- ※ 덧붙임 : 고성군의회의회건서 별첨

고성군의회 의견서

제 목

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 의견요청안

○ 의 견

금회에 제출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은 1954년에 개설된 배둔재래시장을 현대화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시장의 인근 주거지역 3,400㎡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함은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하므로써 도시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됨.

1999. 3. 25

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